



제2911호 2023. 8. 25.(금)

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60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고시 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61호 완도섬자산연결성향상을 위한 식량관망유화로 개살업 지역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항 고시... 3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62호 삼진강 장교곶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잔업도로 개살업 지역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항 고시... 14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63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고시 29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39호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40호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41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4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255호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예고 56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61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라파) 58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63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케이전통문화학술원) 59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64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60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6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61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75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판소리연구소 춘향) 64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77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무주세계인류무형유산판소리보존회) ... 65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7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 66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80호 제403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67

예 규

- 전라북도 예규 제271호 전라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111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3-13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20
- 익산시 공고 제2023-2239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121
- 정읍시 공고 제2023-1255호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25
- 남원시 고시 제2023-121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26
- 김제시 공고 제2023-466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127

기 타

- 전라북도 소방서 공고 제2023-0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129

전라북도 고시 제 2023 - 260호

「하수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지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군산시장
 -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2. 사업목적 : 생활오수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1085-5번지
 - 나. 면 적 : 990m²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가. 명 칭 : 군산 하장곤 공공하수처리시설
 - 나. 용 량 : 120m³/일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가. 예정배수구역 : 0.367km²
 - 나. 예정하수처리구역 : 0.367km²
6. 사업시행기간 : 2021 ~ 2025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063-454-547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조서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관계자			비 고
					주 소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 류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1085-5	답	990	99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3-261호

원도심~지리산 연결성 향상을 위한 식정마을 관광우회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원도심~지리산 연결성 향상을 위한 식정마을 관광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원도심~지리산 연결성 향상을 위한 식정마을 관광우회도로 개설사업
 나.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식정동 537-2번지 일원
 다. 면적 : 85,594.9㎡(L=3.07km, B=10m, 교량 2개소)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 가. 목적 : 국도 19, 24호선은 시가지에서 마을 등을 통과해 지리산으로 향하는 도로이나 연속되는 S자 형태로 교통사고 발생률 상승, 정체 유발, 안정성 저하로,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의 통행불편 해소, 주민편익 제공으로 지역 주민과 도로변 주민의 편의 증대 도모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함
 나. 시행기간 : 2020년 ~ 2025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가. 시행자 : 남원시장
 나. 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가. 지형·지질
 - 지형변화 최소화, 일 토공계획 수립
 - 사면안정화 대책 수립,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 부족토량계획 수립

나. 동·식물상

- 식물상 : 살수차량 운행, 운행속도 제한, 귀화식물 및 보호수, 노거수 관리, 조경식재 계획 등
- 동물상 : 우기시 공사 중지 및 야간공사 지양, 운행속도 제한, 번식기에 대규모 소음발생 공사 지양, 우수배제시설 설치
- 육수동물상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생태·자연도 : 불필요한 편입지역 발생을 지양하여 영향 최소화

다. 대기질

- 사업지구 내 차량 주진입로 및 차량이동로 살수 실시
- 진입도로 선포장,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용 차량 덮개실시 및 차량 운행속도 20km/hr로 제한
- 비산먼지작업장 신고 및 토사 야적시 방진덮개 설치

라. 수질

- 부지조성시 절·성토 작업 및 부지정지작업은 건기시 공사
- 측구, 가배수로 조기 설치, 침사지 4개소 설치(면적 202.9m², 용량 304.4m³)
- 현장사무소 발생 오수는 공공화장실, 숙박시설 및 식당을 이용하여 처리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분뇨 :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처리
- 폐유 : 인근 정비업체에서 이용 및 폐유보관시설 설치 보관 후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 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은 조경수로 재활용하거나, 조경업체에 별개 제근 전에 무상공급하여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

바. 소음진동

- 가설방음판넬 및 작업시간제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 야간작업 가급적 금지
- 속도제한(20km/hr 이하) 및 경적 사용금지
- 장비의 급가동 및 과부하 금지
- 장비조합 및 투입 시기 조정 등
- 저소음·저진동장비 사용 및 대수제한

사. 경관

- 사업지구내 느티나무 식재를 계획하여 주변 조망자들에게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임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해당 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1) 도로설치계획

- 도로계획 : L = 3.07km, B = 10m
- 교량 2개소

다. 토지이용계획 : “해당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 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총사업비		지방비	민자	비고
	국토부	타부처			
12,000	4,613	-	7,387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2020년~2021년	2022년	2022년 이후
계	12,000	1,439	2,500	8,061
국 비	4,613	1,248	750	2,615
지방비	7,387	191	1,750	5,446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 계획 : “해당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보상계획

- 1)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구 분		필지수	면적(m ²)	비 고
토 지	합 계	220	85,594.9	
	사 유 지	34	11,554.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불성립의 경우는 수용함
	국·공유지	186	74,040.7	• 국유재산 관리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무상귀속 또는 유상매입
지 장 물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일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불성립의 경우는 수용함

나. 보상기준

1) 토지 및 건축물 등

- 대상 : 구역 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 방법 : 감정평가금액(평가업자 2인 이상 산술평균)

2) 농업손실

- 대상 : 구역 내 편입된 농지 등
- 방법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 2년분

나. 조성토지의 공급 : “해당 없음”

11. 제27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붙임”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식정마을 관광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통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국도 19호 및 24호가 식정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편익을 제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지역정책과(☎063-281-3616), 남원시 건설과(☎063-620-646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 이음에서 열람(<http://www.eum.go.kr/>) 가능합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 소유자		비고
	도	시,군	동	면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전북	남원	식정		537-2	도	778.0	94.0	국유지	건설부	
2	전북	남원	식정		산61-13	도	2,577.0	1,540.0	공유지	전라북도	
3	전북	남원	식정		230-29	전	6.0	6.0	공유지	남원시	
4	전북	남원	식정		산61-10	도	1,775.0	1,775.0	국유지	건설부	
5	전북	남원	식정		230-2	도	162.0	28.0	공유지	남원시	
6	전북	남원	식정		230-30	임	10.0	10.0	공유지	남원시	
7	전북	남원	식정		230-31	전	72.0	72.0	공유지	남원시	
8	전북	남원	식정		산60-2	도	3,372.0	2,561.0	국유지	건설부	
9	전북	남원	식정		234-3	도	1,001.0	684.0	국유지	건설부	
10	전북	남원	식정		234-2	전	149.0	149.0	공유지	남원시	
11	전북	남원	식정		235-1	도	46.0	46.0	공유지	남원시	
12	전북	남원	식정		234-1	도	278.0	278.0	공유지	남원시	
13	전북	남원	식정		산60-4	도	8,896.0	789.0	국유지	건설부	
14	전북	남원	식정		219-1	답	209.0	209.0	공유지	남원시	
15	전북	남원	식정		219	답	565.0	202.5	공유지	남원시	
16	전북	남원	식정		218-3	답	345.6	345.6	공유지	남원시	(515/535)
	전북	남원	식정		218-3	답	13.4	13.4	이홍복	전라북도 남원시 식정동 315	(20/535)
17	전북	남원	식정		474-2	도	337.0	337.0	서상봉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18	전북	남원	식정		474-4	도	79.0	79.0	박종수	남원시 식정동 344	
19	전북	남원	식정		475-9	대	37.0	7.0	공유지	남원시	
20	전북	남원	식정		산61-20	임	210.0	210.0	공유지	남원시	
21	전북	남원	식정		230-7	도	102.0	102.0	공유지	전라북도	
22	전북	남원	식정		산61-19	임	75.0	75.0	공유지	남원시	
23	전북	남원	식정		산61-18	임	44.0	44.0	공유지	남원시	
24	전북	남원	식정		536-2	구	905.0	353.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25	전북	남원	식정		226-3	도	1,366.0	583.0	국유지	건설부	
26	전북	남원	식정		231-1	도	192.0	192.0	양경환	고죽리	
27	전북	남원	식정		231-2	도	99.0	99.0	양경환	남원시 고죽동 538	
28	전북	남원	식정		232-4	전	519.0	519.0	공유지	남원시	
29	전북	남원	식정		232-2	전	3.0	3.0	남원양씨진사공파종중	남원시 천거동 144	
30	전북	남원	식정		232-3	전	29.0	29.0	남원양씨진사공파종중	남원시 천거동 144	
31	전북	남원	식정		산60-8	임	1,355.0	1,355.0	공유지	남원시	
32	전북	남원	식정		233	전	112.0	112.0	공유지	남원시	
33	전북	남원	식정		220-1	전	2.0	2.0	공유지	남원시	
34	전북	남원	식정		536	구	473.0	109.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 소유자		비고
	도	시,군	동	면			지적	편입	성명	주소	
35	전북	남원	식정		218-5	천	4.8	4.8	공유지	남원시	(515/535)
	전북	남원	식정		218-5	천	0.2	0.2	이홍복	전라북도 남원시 식정동 315	(20/535)
36	전북	남원	식정		521-140	잡	562.0	21.0	공유지	전라북도	
37	전북	남원	식정		521-379	천	152.0	60.0	국유지	건설부	
38	전북	남원	식정		535	도	1,570.0	188.0	국유지	건설부	
39	전북	남원	식정		218-6	천	242.6	242.6	공유지	전라북도	(515/535)
	전북	남원	식정		218-6	천	9.4	9.4	이홍복	전라북도 남원시 식정동 315	(20/535)
40	전북	남원	식정		521-34	천	205,967.0	3,715.0	국유지	건설부	
41	전북	남원	식정		203-3	천	532.0	395.0	공유지	전라북도	
42	전북	남원	식정		203-4	천	99.0	73.0	공유지	전라북도	
43	전북	남원	식정		534-2	도	50.0	29.0	국유지	건설부	
44	전북	남원	식정		217-20	천	875.0	89.0	공유지	전라북도	
45	전북	남원	식정		628	도	1,081.1	447.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46	전북	남원	식정		570-10	답	942.1	942.1	공유지	남원시	
47	전북	남원	식정		569-10	답	175.7	175.7	공유지	남원시	
48	전북	남원	식정		569-9	답	930.4	930.4	국유지	재무부	
49	전북	남원	식정		629	구	2,376.5	1,346.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50	전북	남원	식정		625	도	1,045.6	73.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51	전북	남원	식정		623	구	986.1	27.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52	전북	남원	식정		568-8	답	1,137.4	1,137.4	공유지	남원시	
53	전북	남원	식정		622	도	1,836.4	1,004.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54	전북	남원	식정		624	구	1,263.1	58.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55	전북	남원	식정		566-10	답	327.0	327.0	임기택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965-4 (식정동)	
56	전북	남원	식정		566-11	답	98.3	98.3	임기택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965-4 (식정동)	
57	전북	남원	식정		621	구	850.4	222.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58	전북	남원	식정		178-43	천	271.0	229.0	공유지	전라북도	
59	전북	남원	식정		521-427	천	102.0	4.0	공유지	전라북도	
60	전북	남원	식정		521-430	천	49.0	32.0	공유지	전라북도	
61	전북	남원	식정		570-5	답	840.0	840.0	공유지	남원시	
62	전북	남원	식정		570-11	답	1,378.4	1,378.4	박현숙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목동길 55-12	
63	전북	남원	식정		627	구	1,015.1	108.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64	전북	남원	식정		200	임	538.0	207.0	국유지	기획재정부	
65	전북	남원	식정		197-2	천	42.0	42.0	이용술	남원시 식정동 197	
66	전북	남원	식정		196-2	천	59.1	59.1	공유지	남원시	(15/17)
	전북	남원	식정		196-2	천	7.9	7.9	박성주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25-4,	(2/17)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 소유자		비고
	도	시,군	동	면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01동 401호(교문동, 반석그린빌)	
67	전북	남원	식정		195-2	천	82.0	82.0	박문규	갈치리	
68	전북	남원	식정		192-1	천	2.6	2.6	공유지	남원시	(15/17)
	전북	남원	식정		192-1	천	0.4	0.4	박성주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25-4, 101동 401호(교문동, 반석그린빌)	(2/17)
69	전북	남원	식정		193	천	189.0	189.0	공유지	남원시	
70	전북	남원	식정		192-2	천	35.3	35.3	공유지	남원시	(15/17)
	전북	남원	식정		192-2	천	4.7	4.7	박성주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25-4, 101동 401호(교문동, 반석그린빌)	(2/17)
71	전북	남원	식정		191-2	천	122.0	122.0	이인상	남원시 식정동 191	
72	전북	남원	식정		지번없 음	가		195.0			
73	전북	남원	식정		178-38	계	1,672.0	633.0	공유지	전라북도	
74	전북	남원	식정		178-42	천	218.0	15.0	공유지	전라북도	
75	전북	남원	식정		620	구	656.0	15.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76	전북	남원	식정		지번없 음	가		866.0			
77	전북	남원	식정		564-7	답	1,640.2	1,640.2	공유지	남원시	
78	전북	남원	식정		618	구	437.4	32.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79	전북	남원	식정		563-13	답	666.2	666.2	공유지	남원시	
80	전북	남원	식정		614	도	2,383.4	1,427.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81	전북	남원	식정		563-12	답	96.4	96.4	공유지	남원시	
82	전북	남원	식정		617	구	816.7	20.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83	전북	남원	식정		562-7	답	725.4	725.4	공유지	남원시	
84	전북	남원	식정		178-37	임	615.0	455.0	공유지	전라북도	
85	전북	남원	식정		521-428	천	604.0	313.0	공유지	전라북도	
86	전북	남원	식정		521-315	답	91.0	91.0	공유지	남원시	
87	전북	남원	식정		521-272	전	42.0	42.0	공유지	남원시	
88	전북	남원	식정		132-7	천	879.0	131.0	공유지	전라북도	
89	전북	남원	식정		132-9	답	11.0	11.0	공유지	전라북도	
90	전북	남원	식정		132-8	전	156.0	152.0	공유지	전라북도	
91	전북	남원	식정		521-117	답	2,073.0	408.0	공유지	전라북도	
92	전북	남원	식정		124-3	천	8.0	8.0	이병철	남원시 식정동 336	
93	전북	남원	식정		616	구	204.9	204.9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94	전북	남원	식정		123-2	답	2,005.0	689.0	공유지	전라북도	
95	전북	남원	식정		지번없 음	가		881.0			
96	전북	남원	식정		612	도	502.2	59.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97	전북	남원	식정		611	구	196.4	17.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 소유자		비고
	도	시,군	동	면			지적	편입	성명	주소	
98	전북	남원	식정		561-3	답	1,200.0	535.0	공유지	전라북도	
99	전북	남원	식정		613	구	458.7	458.7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00	전북	남원	식정		561-4	답	309.6	309.6	공유지	남원시	
101	전북	남원	식정		110-8	도	839.0	13.0	국유지	국토교통부	
102	전북	남원	식정		110-9	도	343.0	19.0	국유지	국토교통부	
103	전북	남원	식정		109-55	도	113.0	91.0	국유지	국토교통부	
104	전북	남원	식정		608	구	39.8	1.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05	전북	남원	식정		560-6	답	89.4	89.4	공유지	남원시	
106	전북	남원	식정		560-5	답	193.3	193.3	공유지	남원시	
107	전북	남원	식정		607	구	55.2	55.2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08	전북	남원	식정		599	도	2,983.3	70.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09	전북	남원	식정		555-20	답	412.1	412.1	공유지	남원시	
110	전북	남원	식정		521-112	답	2,123.0	442.0	공유지	전라북도	
111	전북	남원	식정		615	구	52.5	52.5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12	전북	남원	식정		521-392	답	449.0	433.0	공유지	전라북도	
113	전북	남원	식정		521-38	잡	690.0	219.0	공유지	전라북도	
114	전북	남원	식정		521-37	구	332.0	146.0	국유지	건설부	
115	전북	남원	식정		521-36	답	2,028.0	1,025.0	공유지	전라북도	
116	전북	남원	식정		521-394	도	355.0	157.0	국유지	국토교통부	
117	전북	남원	식정		521-35	도	3,483.0	470.0	국유지	건설부	
118	전북	남원	식정		521-33	도	653.0	352.0	국유지	국토교통부	
119	전북	남원	식정		109-53	도	161.0	161.0	국유지	국토교통부	
120	전북	남원	식정		109-3	답	269.0	269.0	사유지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121	전북	남원	식정		597	구	682.8	682.8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22	전북	남원	식정		555-19	답	445.7	445.7	공유지	남원시	
123	전북	남원	식정		555-18	답	466.3	466.3	공유지	남원시	
124	전북	남원	식정		555-17	답	547.9	547.9	공유지	남원시	
125	전북	남원	식정		555-16	답	294.7	294.7	공유지	남원시	
126	전북	남원	식정		555-15	답	245.0	245.0	공유지	남원시	
127	전북	남원	식정		555-14	답	544.3	544.3	공유지	남원시	
128	전북	남원	식정		555-13	답	491.7	491.7	공유지	남원시	
129	전북	남원	식정		555-12	답	102.0	102.0	공유지	남원시	
130	전북	남원	식정		555-11	답	603.0	603.0	공유지	남원시	
131	전북	남원	식정		588	도	2,063.7	95.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32	전북	남원	식정		587	구	482.4	40.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33	전북	남원	식정		550-22	답	659.8	659.8	공유지	남원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 소유자		비고	
	도	시,군	동	면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34	전북	남원	식정		550-21	답	499.4	499.4	공유지	남원시		
135	전북	남원	식정		550-20	답	165.1	165.1	공유지	남원시		
136	전북	남원	식정		550-19	답	664.4	664.4	공유지	남원시		
137	전북	남원	식정		598	도	252.1	252.1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38	전북	남원		이백면 내동리	591-1	천	131,969.0	1,693.0	국유지	건설부		
139	전북	남원	식정		550-18	답	660.0	660.0	공유지	남원시		
140	전북	남원	식정		550-17	답	656.1	656.1	공유지	남원시		
141	전북	남원	식정		550-16	답	603.1	603.1	공유지	남원시		
142	전북	남원	식정		550-15	답	229.0	229.0	공유지	남원시		
143	전북	남원	식정		550-14	답	372.7	372.7	공유지	남원시		
144	전북	남원	식정		550-13	답	650.9	650.9	진춘모	남원시 식정동 309		
145	전북	남원	식정		550-12	답	673.7	673.7	진춘모	남원시 식정동 309		
146	전북	남원	식정		577	도	1,653.3	192.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47	전북	남원	식정		542-34	답	586.4	586.4	진춘모	남원시 식정동 309		
148	전북	남원	식정		542-33	답	473.7	473.7	공유지	남원시		
149	전북	남원	식정		542-32	답	119.9	119.9	공유지	남원시		
150	전북	남원	식정		542-31	답	111.5	111.5	공유지	남원시		
151	전북	남원	식정		542-30	답	478.0	478.0	공유지	남원시		
152	전북	남원	식정		542-29	답	590.5	590.5	공유지	남원시		
153	전북	남원	식정		542-28	답	162.5	162.5	공유지	남원시		
154	전북	남원	식정		585	구	781.1	781.1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55	전북	남원	식정		586	도	558.2	558.2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56	전북	남원	식정		521-1	천	83,936.0	2,666.0	국유지	건설부		
157	전북	남원	식정		578	구	104.8	104.8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58	전북	남원	식정		11	답	20.0	20.0	국유지	기획재정부		
159	전북	남원	식정		10-2	답	762.0	762.0	진춘모	남원시 식정동 309		
160	전북	남원	식정		9-5	답	267.0	267.0	공유지	남원시		
161	전북	남원	식정		7-4	천	71.0	71.0	진경옥	남원시 식정동 7-2		
162	전북	남원	식정		지번없 음	가		2,394.0				
163	전북	남원	식정		542-27	답	106.1	106.1	공유지	남원시		
164	전북	남원	식정		542-26	답	173.6	173.6	공유지	남원시		
165	전북	남원	식정		542-25	답	407.9	407.9	공유지	남원시		
166	전북	남원	식정		542-24	답	119.5	119.5	공유지	남원시		
167	전북	남원	식정		542-23	답	345.7	345.7	공유지	남원시		
168	전북	남원	식정		542-22	답	203.9	203.9	공유지	남원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 소유자		비고
	도	시,군	동	면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69	전북	남원	식정		542-21	답	158.6	158.6	공유지	남원시	
170	전북	남원	식정		542-20	답	365.1	365.1	공유지	남원시	
171	전북	남원	식정		542-19	답	149.1	149.1	공유지	남원시	
172	전북	남원	식정		542-18	답	875.6	875.6	공유지	남원시	
173	전북	남원	식정		521-450	잡	8.0	8.0	공유지	남원시	
174	전북	남원	식정		5-12	장	2.0	2.0	공유지	남원시	
175	전북	남원	식정		5-11	장	168.0	66.0	강매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2 서곡현대아파트102-1402	
176	전북	남원	식정		5-10	전	868.0	868.0	공유지	남원시	
177	전북	남원	식정		5-8	전	508.0	508.0	공유지	남원시	
178	전북	남원	식정		7-5	답	572.0	572.0	이근우외6	남원시 쌍교동 183	
179	전북	남원	식정		523	구	50.0	50.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80	전북	남원	식정		571	구	759.0	361.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81	전북	남원	식정		6-58	임	631.0	631.0	공유지	남원시	
182	전북	남원	식정		6-4	임	36.0	36.0	오명섭	남원시 신정동 5	
183	전북	남원	식정		6-56	임	106.0	106.0	공유지	남원시	
184	전북	남원	식정		6-57	답	184.0	184.0	공유지	남원시	
185	전북	남원	식정		산26-1	천	10,486.0	1,223.0	공유지	남원시	
186	전북	남원	식정		5-7	전	198.0	198.0	공유지	남원시	
187	전북	남원	식정		4-65	답	419.0	419.0	공유지	남원시	
188	전북	남원	식정		5-9	전	416.0	416.0	공유지	남원시	
189	전북	남원	식정		3-65	임	14.8	14.8	공유지	남원시	
190	전북	남원	식정		3-62	도	5,011.7	1,477.0	국유지	건설부	
191	전북	남원	식정		4-27	전	340.0	37.0	국유지	기획재정부	
192	전북	남원	식정		3-66	임	723.5	723.5	공유지	남원시	
193	전북	남원	식정		3-37	도	149.1	149.1	국유지	건설부	
194	전북	남원	식정		3-36	도	96.0	96.0	공유지	남원시	
195	전북	남원	식정		1-49	도	19.5	19.5	국유지	건설부	
196	전북	남원	식정		3-63	전	56.5	56.5	공유지	남원시	
197	전북	남원	식정		3-64	전	36.6	36.6	공유지	남원시	
198	전북	남원	식정		2-13	도	61.0	28.0	국유지	기획재정부	
199	전북	남원	식정		2-19	전	28.1	12.0	국유지	기획재정부	
200	전북	남원	식정		2-15	전	269.0	269.0	국유지	기획재정부	
201	전북	남원	식정		2-6	전	419.0	150.0	국유지	기획재정부	
202	전북	남원	식정		2-20	전	45.9	45.9	국유지	기획재정부	
203	전북	남원	식정		2-10	도	179.0	179.0	국유지	기획재정부	
204	전북	남원	식정		2-26	전	13.1	13.1	공유지	남원시	
205	전북	남원	식정		2-9	도	58.8	58.8	공유지	남원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 소유자		비고
	도	시,군	동	면			지적	편입	성명	주소	
206	전북	남원	식정		4-22	도	222.4	18.0	국유지	건설부	
207	전북	남원	식정		3-61	임	793.0	793.0	국유지	기획재정부	
208	전북	남원	식정		4-16	도	454.0	355.0	국유지	건설부	
209	전북	남원	식정		4-66	전	153.0	153.0	손경석외1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2226 (식정동)	
210	전북	남원	식정		4-53	답	288.0	288.0	공유지	남원시	
211	전북	남원	식정		4-62	답	1,718.0	1,718.0	공유지	남원시	
212	전북	남원	식정		2-24	도	1,171.6	1,171.6	국유지	건설부	
213	전북	남원	식정		2-23	임	525.3	545.5	공유지	남원시	(27/54)
	전북	남원	식정		2-23	임	565.7	545.5	소연호	남원시 내척동 507	(27/54)
214	전북	남원	식정		4-61	답	12.0	12.0	공유지	남원시	
215	전북	남원	식정		2-28	도	6.8	6.8	공유지	남원시	
216	전북	남원	식정		1-35	도	116.2	5.0	국유지	건설부	
217	전북	남원	식정		1-84	도	32.2	1.0	국유지	건설부	
218	전북	남원	식정		1-80	도	1,272.6	1,247.0	국유지	건설교통부	
219	전북	남원	식정		4-18	도	377.6	377.6	국유지	건설교통부	
220	전북	남원	식정		1-57	대	48.0	25.0	국유지	기획재정부	
합 계							557,672.5	85,594.9			

전라북도 고시 제2023-262호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
- 나.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67-1,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1일원
- 다. 면적 : 207,558.6㎡ (도로개설: L=7.6km, B=8.0m)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 가. 목적 : 섬진강 장군목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통행여건 개선
- 나. 시행기간 : 2018년 ~ 2026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가. 시행자 : 순창군수(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나. 시행방식 : 협의에 의하여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동·식물상, 대기질, 지형·지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히 수립 추진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가. 인구수용계획 : “해당 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 교통처리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가로망체계 구축 및 도로의 위계 부여
- 국도21호선(시점부)와 국도15호선(중점부)를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다. 토지이용계획 : 도로개설 L=7.6km, B=8.0m

6. 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개설: L=7.6km, B=8.0m
- 섬진강 장군목 유원지 및 용월산 자생식물원, 주변마을 진출입 통행편의를 고려하여 도로계획 수립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총사업비		지방비	민자	비고
	국토부	타부처			
31,500	12,500	-	19,000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2018년~2021년	2022년	2022년 이후
계	31,500	12,936	1,564	17,000
국 비	12,500	11,105	1,395	-
지방비	19,000	1,831	169	17,000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 계획 : “해당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보상계획

- 1)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구 분		필지수	면적(m ²)	비 고
토 지	합 계	228	207,558.6	
	사 유 지	169	157,87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불성립의 경우는 수용함
	국·공유지	59	49,6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관리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무상귀속 또는 유상매입
지 장 물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불성립의 경우는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해당 없음”

11. 제27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붙임”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섬진강 장군목 유원지는 순창군의 생태관광을 이끌 수 있는 요충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여하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기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지역정책과(☎063-280-3616), 순창군 건설과(☎063-650-181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288	답	2,638.0	385.0	김*윤	296				
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289	대	496.0	146.3	김*기	경기도 광주시 태성로 * (태*동, 월*테이트테크)				
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298	임	1,101.0	751.8	임*숙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300	임	522.0	465.8	진*석					
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301	임	453.0	224.5	임*숙					
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302	진	1,441.0	664.0	박*영	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번길 (옥*동)				
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303	전	1,934.0	332.5	강*옥	전주시 완산구 백계대로 * (삼천동2가, 쌍*아파트)				
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19	답	1,487.0	884.8	순창군					
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19-1	답	90.0	90.0	순창군					
1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0	답	2,968.0	178.7	순창군					
1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1	임	612.0	562.4	순창군					
1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1-1	임	62.0	55.1	순창군					
1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2	양	3,460.0	128.9	이*순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1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5	답	985.0	560.8	순창군					
1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5-1	답	3,976.0	913.8	순창군					
1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6	답	661.0	531.9	양*원 외3인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1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6-1	답	1,094.0	35.3	순창군					
1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7	답	1,838.0	1,673.0	순창군					
1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7-1	대	517.0	327.4	순창군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7-2	답	275.0	60.7	순창군					
2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7-3	답	231.0	14.0	순창군					
2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7-4	답	548.0	438.5	순창군					
2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7-5	답	108.0	107.9	순창군					
2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9-1	답	1,348.0	501.3	권*석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동계농업 협동조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47	근저당권	
2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30	전	1,098.0	533.6	조*태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 (팔복동2가)				
2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31	전	4,724.0	588.2	설*경	전주시 덕진구 호반로 *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30 (충정로1가) (순창군지부)	근저당권	
2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32-22	임	450.0	360.1	이*자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				
2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32-28	대	720.0	85.2	선*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				
2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32-29	도	685.0	33.5	순창군					
3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32-30	도	373.0	185.9	순창군					
3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32-33	임	91.0	91.0	선*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				
3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98-8	대	868.0	734.0	안*섭 외2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				
3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98-16	도	1,030.0	114.9	이*구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3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98-21	전	1,263.0	445.1	이*구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3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99	답	552.0	251.8	이*구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3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0	전	7,992.0	1,125.7	양*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동계농업 협동조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47	근저당권	
3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0-2	도	517.0	61.9	양*룡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3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1-1	답	2,026.0	387.7	양*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동계농업 협동조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47	근저당권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1-2	도	13.0	13.0	순창군					
4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2-1	친	36.0	36.0	정*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4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2-2	도	36.0	36.0	정*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4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3-1	도	483.0	5.0	양*일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동계농업 협동조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47	근저당권	
4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3-2	도	182.0	112.9	양*문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4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3-3	대	608.0	562.7	양*주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4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4	전	274.0	274.0	유*길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4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5-2	전	205.0	86.0	이*근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4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5-3	전	418.0	12.2	유*길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4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5-5	전	218.0	21.3	이*근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4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05-6	전	114.0	86.4	유*길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5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13	과	2,486.0	0.6	양*일 외1인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동계농업 협동조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47	근저당권	
5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31-1	전	3,418.0	0.8	유*길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5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32-3	대	1,698.0	1,468.7	유*길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5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33	전	962.0	959.4	이*목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5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34	전	1,816.0	1,122.2	박*희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5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34-1	전	8,698.0	530.8	서*하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				
5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34-15	대	1,278.0	1,198.6	공*린	광주광역시 북구 어운길 *				
5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34-16	도	158.0	158.0	공*린	광주광역시 북구 어운길 *				
5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35	전	2,403.0	1,523.6	김*진	완주군 구이면 마을길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0	전	420.0	420.0	남원진씨 **공파 **종중	순창읍 순화리 *				
6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1	전	337.0	261.9	박*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주*아파트				
6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2	전	1,147.0	656.7	박*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주*아파트				
6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3	전	1,369.0	572.4	김*희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				
6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3-1	전	8,339.0	154.3	박*자 외2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				
6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4	답	1,299.0	699.4	김*희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				
6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5	전	870.0	645.5	문*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				
6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5-1	전	870.0	561.1	서*원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6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5-2	전	870.0	478.2	강*식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				
6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5-3	전	870.0	439.0	오*택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6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5-4	대	870.0	426.2	서*원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				
7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5-5	전	668.0	332.0	서*원 외3인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7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7	전	6,129.0	3,282.4	전*봉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7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66-7	임	4,014.0	31.9	국 (기획 재정부)					
7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66-9	임	552.0	285.8	박*래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7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66-10	전	2,030.0	614.5	민*경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7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67	묘	2,661.0	1,322.4	박*래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7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0	임	5,716.0	3,238.8	박*주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7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1	전	235.0	10.9	박*봉	남원시 노암동 *				
7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2-1	답	26.0	13.9	박*원	전주시 완산구 효천중앙로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2-2	도	69.0	45.7	박*원	전주시 완산구 효천중앙로 *				
8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2-3	답	109.0	109.0	박*원	전주시 완산구 효천중앙로 *				
8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3-1	전	466.0	168.1	전*봉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				
8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6	답	565.0	25.1	박*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 *				
8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7-1	답	2,304.0	1,499.7	박*순	*				
8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7-2	도	7.0	7.0	순창군					
8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8-1	답	1,484.0	710.0	박*래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동계농업 협동조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47	근저당권	
8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8-2	도	36.0	36.0	박*래	*				
8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9-1	전	390.0	185.9	전*봉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				
8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79-2	도	36.0	35.6	전*식	적성면 석산리 *				
8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80-1	답	1,160.0	906.4	전*봉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				
9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80-2	도	30.0	27.5	전*중	*				
9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81-2	답	1,015.0	4.8	박*래 외2인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9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82	답	2,162.0	323.2	전*봉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9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83	답	1,557.0	82.6	박*동	천안시 동면 동산리 *				
9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03-1	답	1,263.0	112.4	이*배 외2인	임실군 덕치면 가곡리 *				
9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03-2	도	102.0	26.0	박*영	*				
9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04-1	대	495.0	312.0	박*주	*				
9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04-2	도	83.0	28.6	순창군					
9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05-1	전	582.0	569.7	인*권	순창읍 남계리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05-2	도	13.0	13.0	진*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				
10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08	전	1,412.0	347.6	박*임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10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09	답	3,177.0	2,168.2	박*순 외3인	*				
10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10	전	631.0	55.9	국 (국토 교통부)					
10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11	전	113.0	89.2	송*순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				
10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11-1	전	191.0	-	국 (국토 교통부)	*				
10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12	전	443.0	443.0	박*순	*				
10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13	전	761.0	593.6	송*순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				
10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14	전	2,284.0	1,604.5	박*만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				
10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16	전	1,855.0	1,025.9	박*순	*				
10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17	전	612.0	217.7	오*석 외2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11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35	친	466.0	201.5	박*규					
11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36	전	1,183.0	923.8	박*민	임실군 덕치면 천담1길 *				
11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37	임	632.0	619.9	오*근 외2인	남원군 대강면 월탄리 *				
11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38	전	985.0	883.8	전*봉	*				
11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39	전	549.0	539.3	전*봉	*				
11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40	답	1,481.0	639.6	전*봉	*				
11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41	답	1,597.0	666.2	김*숙 외2인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11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46	임	740.0	366.0	오*근	*				
11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48	임	529.0	343.9	박*임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49	답	2,007.0	350.5	홍*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				
12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74	답	1,987.0	108.9	진*훈	임실군 덕치면 천담2길 *				
12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75	답	923.0	520.0	박*임	전주시 덕진구 호반로 *				
12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75-1	답	300.0	300.0	박*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				
12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76	답	2,053.0	836.0	양*준 외1인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	삼례신용 협동조합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356	근저당권	
12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77	임	1,927.0	503.1	조*운	전주시 덕진구 솔내2길 *				
12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78	답	995.0	231.0	오*선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12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80	전	1,018.0	68.0	오*선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12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95	천	11,114.0	199.3	국 (건설 교통부)					
12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99	천	41,309.0	217.1	국 (건설 교통부)					
12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00	도	803.0	157.0	국 (건설부)					
13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02	도	195.0	82.3	국 (건설부)					
13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06	구	6,660.0	645.8	국 (건설부)					
13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07	도	1,646.0	749.5	국 (건설부)					
13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08	도	5,630.0	227.2	국 (건설부)					
13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09	구	7,035.0	640.7	국 (건설부)					
13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12	도	441.0	167.8	국 (건설부)					
13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13	도	3,302.0	1,572.7	국 (건설부)					
13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16	도	5,289.0	143.4	국 (건설부)					
13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01- 1	임	1,938,895. 0	21,343.7	순창군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55	임	127,736.0	5,259.8	김*훈 외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김*기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	근저당권	
14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60	임	5,950.0	2,086.2	이*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성*상메빌팰리스				
14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61	임	4,959.0	2,007.1	김*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 신*아파트				
14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62	전	3,372.0	784.8	임*남	임실군 강진면 백연리 *				
14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63	임	2,281.0	15.5	이*문	남원군 남원면 왕정리				
14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65	임	7,636.0	1,609.2	박*영	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 (옥길동)				
14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67	임	14,876.0	3,449.0	김영김씨 **공과 **중증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				
14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68	임	69,620.0	6,510.2	김영김씨 **공과 **중증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				
14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70- 2	임	62,281.0	5,521.1	순창군					
14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70- 3	임	99,769.0	6,685.3	순창군					
14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70- 4	임	60,298.0	2,462.3	제*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인*아파트				
150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73	임	41,950.0	3,321.2	임*철 외3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 현*아파트				
151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75- 1	임	73,884.0	2,157.1	오*석	인천시 북구 작전동 *				
152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77- 1	임	29,752.0	1,020.5	최*순	순창군 팔덕면 팔왕길 *				
153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77- 2	임	20,826.0	1,650.2	박*봉	*				
154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84- 1	임	18,879.0	2,269.1	서*하 외1인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				
155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84- 2	천	1,688.0	128.1	국 (국토 교통부)					
156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85- 2	임	23,483.0	351.9	공*린	광주광역시 북구 어운길*				
157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87	임	2,182.0	526.5	박*희	전주시 완산구 흑석1길 *				
158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88	임	22,910.0	2,079.7	양*영 외2인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9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192	임	118,215.0	8,348.4	초산이씨 **** 공과종중	정읍시 연지동 *				
16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00	전	1,293.0	639.4	양*춘	순화리 * 영*빌라				
16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04	전	936.0	666.4	양*만	서울 성동구 마장동 *				
16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05	전	1,762.0	23.0	이*로	임실군 오수면 용정길 *				
16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7-1	임	31,544.0	6,418.2	양*중	순창군 동계면 귀미3길 *				
16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7-2	구	975.0	352.9	한국 농어촌 공사					
16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7-3	임	1,435.0	889.4	양*중	순창군 동계면 귀미3길 *				
16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7-9	임	27.0	27.0	국 (국토 교통부)					
16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8-4	도	34.0	34.0	양*묵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				
168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8-5	답	557.0	93.1	김*자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로 *				
16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8-6	도	39.0	35.7	국 (국토 교통부)					
17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38-7	답	27.0	27.0	국 (국토 교통부)					
17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2-1	대	541.0	138.3	순창군					
17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2-3	도	30.0	11.8	국 (국토 교통부)					
17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2-5	대	4.0	4.0	국 (국토 교통부)					
17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743-4	대	1,669.0	7.2	순창군					
17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86	답	995.0	663.4	이*덕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				
17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86-1	임	1,894.0	35.2	이*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				
17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86-2	과	1,864.0	1,165.6	이*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				
178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86-3	임	3,914.0	85.1	이*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96-1	답	3,468.0	1,314.0	권*환	순창군 동계면 귀미2길 *				
18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98-1	대	711.0	536.3	이*현 외2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				
18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98-2	전	4,528.0	829.4	이*현 외2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				
18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00	답	2,489.0	192.6	조*철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				
18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00-2	양	487.0	204.2	남원양씨 ***공 중중 외1인	순창군 인계면 세룡리 *				
18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02-1 4	구	797.0	315.4	국 (건설부)					
18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15	천	6,674.0	919.8	국 (국토 교통부)					
18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17	도	1,121.0	89.4	국 (건설부)					
18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5-1 3	답	936.6	206.5	국 (국토 교통부)					
188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5-1 4	답	489.7	59.7	국 (국토 교통부)					
18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27-2	답	3,357.6	39.3	양*규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				
19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64-1	도	475.3	227.0	국 (농림부)					
19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64-2	도	120.4	120.4	국 (농림부)					
19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64-3	도	342.5	9.6	국 (농림부)					
19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67-1	도	1,453.1	113.9	국 (농림부)					
19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1	임	667,217.0	8,210.5	남원양씨 ***공 중중 외1인	순창군 인계면 세룡리 *				
19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14	임	9,620.0	1,381.1	양*현 외1인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				
19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15	임	11,603.0	1,362.5	양*호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				
19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16	임	3,666.0	1,599.5	선*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8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18	임	14,876.0	3,115.5	양*규 외2인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				
19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24	임	3,868.0	1,277.7	권*환	순창군 동계면 귀미2길 *				
20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25	임	13,091.0	457.4	강*희	서울 송파구 삼전동 *				
20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28	임	15,471.0	3,921.1	권*환	순창군 동계면 귀미2길 *				
20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32	도	704.0	444.6	최*희 외4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				
20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33	임	1,063.0	819.3	홍*숙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				
20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34	임	2,824.0	964.2	홍*숙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				
20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35	임	1,539.0	135.1	홍*숙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				
20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38	임	3,896.0	1,573.9	최*희 외5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	동계농업 협동조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47	근저당권	
20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11-4	임	814.0	261.5	이*현 외2인	전주시 덕진구 명주3길 * (인후동3가)				
208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11-5	도	286.0	101.3	이*현 외2인	전주시 덕진구 명주3길 * (인후동3가)				
20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11-6	임	9,076.0	2,292.9	이*현 외2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				
210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11-7	임	780.0	8.9	이*현 외2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				
211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0	임	7,934.0	46.2	황*성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로 *, (로*퍼스트빌)				
21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1-1	임	27,769.0	2,362.9	양*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 신*아파트				
213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1-2	임	12,000.0	2,717.7	권*환	순창군 동계면 귀미2길 *				
21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31-3	임	2,479.0	1,054.2	양*화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				
21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40	임	79,687.0	2,315.2	남원양씨 *****공 **중중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				
216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43	임	1,983.0	205.1	양*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				
217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산44	임	15,868.0	6,588.5	양*만	서울 성동구 마장동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8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1	도	8,626.0	1,370.1	전라북도					
219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4	구	3,577.0	212.1	국 (농림 수산부)					
220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22	답	2,403.1	87.3	임*엽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가길 *				
221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23-1	답	1,967.8	1,484.0	임*문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222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23-2	답	1,211.8	663.3	한*만 외3인	삼계면 어은리 *				
223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23-3	답	751.8	322.1	백*선 외3인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 다세대				
224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24	답	1,201.8	706.4	백*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 교*타운				
225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39	도	201.7	176.3	국 (농림부)					
226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41	구	1,023.7	215.1	국 (농림부)					
227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42	구	359.9	309.7	국 (농림부)					
228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43	도	485.8	347.6	국 (농림부)					
합 계				4,002,589.6	207,558.6						

전라북도 고시 제2023-263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8월 25일

■ 고 시 사 항

①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 명 칭 : 고산 자연휴양림
-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산43-1번지의외 2필
- 지정면적 : 6,720,166㎡
- 조성면적 : 93,082.69㎡

② 2023년 자연휴양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3년	비고
계	620	620	
공정별	설계비	18	
	공사 및 자재비	602	

③ 2023년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당초					변경					비고
		규모	수량	조성내역			규모	수량	조성내역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전체 면적 (㎡)	연면적 (㎡)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전체 면적 (㎡)	연면적 (㎡)	
합 계				92,432.69	5,196.44	5,747.92			93,082.69	5,324.44	5,875.92	
목재칩 연료생산· 공급시설	동						128.0㎡	1	650.0	128.0	128.0	신축

④ 자연휴양림 시설물 배치도



※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 숲문화팀 박덕유(280-466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 - 39호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법 상 ‘별장’의 중과세 규정 삭제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예산과 협의
- 다. 협 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심사),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 라. 입법예고 : 2023년 8월 25일 ~ 9월 14일
- 마. 비용추계서 : 붙임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세정과 세정팀(전화 : 063-280-2318, FAX : 063-280-2319)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세정과 세정팀 (063-280-23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별장, 골프장” 을 “골프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u>별장</u>, <u>골프장</u>, <u>고급주택</u>, <u>고급오락장</u> 또는 <u>고급선박</u>을 취득한 자</p> <p>5. (생략)</p>	<p>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골프장</u> ----- ----- -----</p> <p>5. (현행과 같음)</p>

붙임 1**관계 법령****<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종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종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6. 12. 27., 2018. 12. 31., 2023. 3. 14.>

1. 삭제 <2023. 3. 14.>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별도 비용 발생 없음

3. 작성자

- 세정과 지방세무6급 강정모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 - 40호

「전라북도 도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 인용 조문 정비(조례안 제6조)

- 안 제6조 중 법 제10조제4항을 제10조의6제4항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예산과 협의
- 다. 협 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심사),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 라. 입법예고 : 2023년 8월 25일 ~ 9월 14일
- 마. 비용추계서 : 붙임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세정과 세정팀(전화 : 063-280-2318, FAX : 063-280-2319)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세정과 세정팀 (063-280-23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4항” 을 “법 제10조의6 제4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 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 10조의6제4항-----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붙임 1**관계 법령****<지방세법>**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별도 비용 발생 없음

3. 작성자

- 세정과 지방세무6급 강정모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 - 41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

-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안 제4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12조)
-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3조)
-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예산과 협의
- 다. 협 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기업애로해소지원단(규제심사),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 라. 입법예고 : 2023년 8월 25일 ~ 9월 14일
- 마. 비용추계서 : 붙임
- 바. 기타사항 : 사전절차 이행 관련
- 1) 지방세심의위원회 9월 4일 심의 예정: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연장 관련 심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관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세정과 세정팀(전화 : 063-280-2318, FAX : 063-280-23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세정과 세정팀 (063-280-23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생략)</p> <p>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 2. (생략)</p>	<p>제4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2026년 <u>12월 31일</u>-----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p>	<p>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 ----- ----- -----</p>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발
 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
 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전라북도 내장산리조
 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
 른 관광지조성 사업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
 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
 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
 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성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
 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
 징한다.

 -----.

제13조(전라북도 내장산리조
 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

 ----- 2026년 12월 31일 -----

 -----.

 -----.

1. ~ 3. (생략)

②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고1 **관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조항 감면기한 연장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 되는 비용이 없음.

3. 작성자

- 세정과 지방세무6급 강정모

전라북도 공고 제2023-255호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예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기념물)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8월 25일

1. 공 고 명 :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전주부성지

○ 신청종별 : 전라북도 기념물

○ 명 칭 : 전주부성

○ 시 대 : 조선시대

○ 규 모 : 17필지 1,884.8㎡

○ 소재지

- 북동편 구역(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26-5번지 일원)

- 북서편 구역(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40-1번지)

○ 소유자(관리단체) : 전주시

○ 예고 사유

- 전주부성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을 비롯한 관청과 조선왕실의 상징적 공간인 경기전·조경묘 등을 지키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평지성이었다.

- 우왕14년(1388) 전라감사 최유경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영조 10년(1734)에 당시 전라감사였던 조현명이 개축한 이후 여러 차례 중건되었으나, 일제의 침탈이 시작되는 1907년부터 1914년까지 풍남문을 제외한 모든 성벽과 성문이 헐리게 되었다.

- 성벽부재 일부는 전동성당의 기초부로 사용되었고, 성벽 자리는 도로, 주택 등이 조성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북동편 일원에서 1~2단 정도의 전주부성 기초부와 북서편에서 호선으로 돌아가는 성곽이 1~3단 정도가 확인되었다.

- 전주부성지는 조선시대 전라도를 관장하는 읍성의 터로서의 현재 기초부만 남아있지만, 역사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 터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조선 후기의 고지도를 비롯한 『축성계초』 등을 통한 고증이 가능하며, 일제강점기 관련 지적도를 통해서도 축성 과정 및 규모, 공사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다.

3. 지정 및 등록 예고일 : 도보 공고일

4. 지정 및 등록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도청이나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 락 처

가.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나. 전주시청 문화유산과

- 주소: (우)55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전화 : 063-281-5356 / 전송 : 063-279-4598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61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라파)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8월 25일

1. 등 록 번 호 : 제2023-36호
2. 단 체 명 칭 : 사단법인 라파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85, 2층
4. 대표자성명 : 유 선 이
5. 허가연월일 : 2023년 8월 16일
6. 설 립 목 적 : 빈곤층 및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 빈곤층 및 사회 취약계층이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건전하고 행복한 삶의 의지를 북돋아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63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케이전통문화학술원)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8월 25일

1. 허가 번호 : 제2023-35호
2. 법인 명 : 사단법인 케이전통문화학술원
3. 소재지 : 전북 익산시 무왕로8길 28, 2층(신동)
4. 대표자 : 박광수
5. 허가연월일 : 2023. 8. 10.
6. 설립 목적 : 한국의 고유한 정신과 사상, 유무형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 문화유적지 체험사업,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교육사업, 해외교류 사업을 통해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한류의 전문화 대중화,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1464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외변산~원평 (지방도 736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회전교차로 1개소(내접원 지름 27.0m)		
도로공사 구간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31번지 일원(지방도 736호선)		
도로공사 시행장소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231번지 일원(지방도 736호선)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23. 8.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2024. 12. 31.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김제 원평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6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제출 관련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해당업체에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

도지사

1. 공시송달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처분업종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
(주)세진건설 (이영*)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금백로 903	건축공사업 (14-0455)	영업정지 1개월 (2023.08.23.~ 2023.09.2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시정명령 미이행)	2023.08.23.

2. 공시송달기간 : 2023. 8. 25. ~ 9. 22(28일간)

3. 공시송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제출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5.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른 절차 후 불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 및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한건설협회(전북도회)에 통지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주)세진건설 (이영*)	건축공사업 (14-0455)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금백로 903	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2023.08.23 ~ 2023.09.22	23.08.23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건설공사가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증빙자료 보관-처분청 요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 건설업 등록말소가 됨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붙임2) - 2021.1월 ~ 2022.12월
 - 회사 중도 퇴사자 및 현재 보유 기술자 현황을 월별로 작성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일치 기재
-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서류제출일 기준
- ③ 건설기술자 수첩 사본
- ④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서류제출일 기준

- ⑤ 보유기술인 급여 이체 확인증(최근 2개월) 및 근로계약서 사본
- ⑥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⑦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문 의 처

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형근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280-4455
전자우편	kimhg119@korea.kr			FAX	280-3419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75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판소리연구소 춘향)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8월 25일

■ 공 고 사 항

- ① 허가번호 : 제2023-33호
- ② 법인명칭 : 사단법인 판소리연구소 춘향
- ③ 대 표 자
 - 성 명 : 김 호 정
 - 생 년 월 일 : 63. 10. 3.
- ④ 허가연월일: 2023. 8. 14.
- ⑤ 설립목적 : 남원지역의 판소리 역사를 연구하고 계승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77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무주세계인류무형유산판소리보존회)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8월 25일

■ 공 고 사 항

- ① 허가번호 : 제2023-34호
- ② 법인명칭 : 사단법인 무주세계인류무형유산판소리보존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안 예 솔
 - 생 년 월 일 : 01. 2. 12.
- ④ 허가연월일: 2023. 8. 14.
- ⑤ 설립목적 : 무주군에서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고유 민속예술인 국악(판소리, 가야금산조 및 병창, 판소리고법)의 전승, 보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7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8월 25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2023-1-전북-18호
- ②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 ③ 대 표 자
 - 성 명 : 이 립
 - 생 년 월 일 : 56. 9. 20.
- ④ 등록연월일: 2023. 8. 11.
- ⑤ 주요사업
 - 차와 함께 즐기는 전주화전놀이행사
 - 전주연꽃차회
 - 전북청소년차예절대회
 - 송년차인의 밤 행사
 - 차 문화 및 인성예절지도사 자격 양성교육
 - 본 협회의 사범교육, 차 문화행사, 연수 등 참가
 - 기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행사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1480호

제403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8월 25일

연번	조례안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예산과 배홍균(063-280-2167)
2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예산과 정혜민(063-280-3105)

※ 문의처 :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 재원 정의 명확화(안 제4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 명시
 - (당초)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47%) → (개정안)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47%)
-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조정교부금 재원 제외 대상 중 일부수정
 - (당초)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
 - (개정안)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

나. 시도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비세액 중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되는 내용 삽입(안 제4조제1항제2호)

- 괄호 삽입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

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대상 중 재정지원(인센티브) 대상 확대

(안 제6조제2항제3호)

- (당초)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 (개정안)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2~제6조의4)

- 위원회는 6명~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
 - 당연직(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 위촉직(7명 이내) : 지방행정·지방재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
-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함

마. 조정교부금 반환·감액 기준 구체화(안 제8조)

-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거나 받으려 한 때, 민간지원 보조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도지사 승인없이 용도 변경하거나 배분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반환 또는 감액 사항 명시

바. 정보공개 범위 확대 조문 신설(안 제12조)

- 시·군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교부액 등을 매년도 홈페이지에 공개

사. 기타 일부 자구수정 등

현행	개정안	해당조항
당해	해당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
인구	인구수	제4조제1항제2호
일반조정교부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2564(‘21.8.30.)호]

- ▶ 권고내용 : ①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② 반환·감액기준 정비
③ 집행내역 정보공개 확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 2023. 7. 14. ~ 2023. 8. 3.(20일간), 의견없음

4.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시의” 를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라북도의 지방소비세액” 을 “도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 으로, “전라북도의 인구” 를 “도의 인구수” 로, “인구를” 을 “인구수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 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 시·군의 인구수” 를 “해당 시·군의 인구수” 로, “당해 시·군의 도세” 를 “해당 시·군의 도세” 로, “당해 시·군” 을 “해당 시·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을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

의 교부·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중 “일반조정교부의 총액을 당해” 를 “일반조

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시·군의” 를 “해당 시·군의” 로, “당해 시·군에” 를 “해당 시·군에”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을 “(조정교부금의 반환·감액 등)” 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감액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중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배분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시장·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받고 당해” 를 “받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시·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조정교부금”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써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u>당해</u>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u>시의</u>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u>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u>, 지방교육세는 제외한</p>	<p>제2조(정의) ----- ----- -----.</p> <p>1. ----- ----- ----- <u>해당</u>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 ----- ----- <u>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u> ----- -----.</p> <p>1. ----- ----- ----- <u>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u> 및 -----</p>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 1. (생략)
-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 4. 5. (생략)
- ③ ~ ⑥ (생략)

<신설>

----- 해당 시·군 -----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

----- 해당 -----

3.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 4. 5.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

개발·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
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
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
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
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
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
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
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 설>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중 일반조정교부의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

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

----- 해당 시·군의 -----
----- 해당 시·군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감액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

부금을 배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5항을 위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중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배분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군수의 귀책사유로 해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당해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시장·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 신청) ① -----

----- 받고 -----

② -----

----- 해당 -----

제11조(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시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12조 (생략)

제11조(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시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

----- 해당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시·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붙임 1**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9. 12. 31., 2021. 12. 7.>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 5. 28.>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시·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

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5. 28.]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

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8. 29.>

④ 삭제 <2016. 8. 29.>

⑤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8. 29.>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21.8.10.)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예산과 지방행정6급 배홍균(280-2167)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1. 개정이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 및 안건 제척사유 규정 마련 등 구성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을 구체적 명시(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을 기존 법령 및 국비 보조사업에 투자심사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규정 신설(안 제10조 신설)

- 과제선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척·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해임 및 해촉규정 신설(안 제11조 신설)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해촉

규정 마련

라.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안 제16조제2항 신설)

- 위원회가 용역평가 결과서 검토 후에 불량한 연구자에게 향후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 규정 명시

마.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안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기존 공개, 비공개에서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로 결과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비공개 시 사유 및 공개전환시점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와 협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입법예고(2023. 7. 21. ~ 2023. 8. 10. / 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불임

4.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례 일부개정조례안 : 불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중” 을 “사무 중”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비 보조사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국비보조사업도” 를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로, “필요성 인정시 심의 할 수 있다” 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없을때” 를 “없을 때”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을시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를 “있을 때 분기마다 실시하되” 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를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7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2조 및 제1

3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0조의2를 제13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1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사업안”을 “용역의 과업지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호”를 “제4호”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0조의2)제1항 중 “용역시행부서”를 “용역시행부서”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용역상황의 점검)”을 “(용역진행상황의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용역진행상황”을 “용역 진행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역계획서상”을 “용역 과업지시서상”으로,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를 “연구자에게”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1조의2)의 제목 “(용역 결과의 평가)”를 “(용역결과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되, 용역 결과물과 연구자에 대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단순 반복적인 기술·전산·설문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6조(중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용역계약”을 “제15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용역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등의 공개대상은 제3조제2항제1호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회의시마다”를 “회의 때”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8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용역 결과물 평가결과서

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용역실무자				
연구방식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경쟁입찰()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주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5. 연구윤리 점검 결과 (위조, 변조, 표절 등)						
6. 연구자 점검 결과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확인	구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담당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평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소			
	참석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한 용역과제는 제외한다.

2. ~ 5.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②용역과제 심의는 제2조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다음 사항에 한 한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3. 국비보조사업도 용역비 축소 및 용역사업의 방향제시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

---. <단서 삭제>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범위-----
-----.

②-----

----- . 다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비 보조사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은 제외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

원회”라 한다)에서 필요성 인정시 심의 할 수 있다.

③용역과제 평가는 제2항의 제1호에 한 한다. 다만, 단순 반복적인 기술·전산·설문조사는 제외한다.

제5조(구성) ① ~ ⑤ (생략)

⑥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용역과제가 있을시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도

-----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삭 제>

제5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없을 때 -----
-----.

제8조(회의) ①-----
----- 있을 때 분기마다 실시하되 -----

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용역과제의 제출) ①도
지사는 용역사업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항
이 포함된 용역사업안을 작
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
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 4호의 기존 용역과
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
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
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
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용역과제의 제출) ①--

--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제4호-----

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제10조의2(용역실명제) ① 용
역시행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회에 용역과제를 제출할 때
실명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용역상황의 점검) ①과
제담당관은 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
상 용역진행상황을 중간 점
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용역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만, 용역기간이 2월 이하인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
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
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용역
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진행 상
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

-.

제1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
시행부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
----- 용역
진행상황-----

-----.

②-----
----- 용역 과업지
시서상-----

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제12조(용역결과 등의 보고)

(생략)

<신 설>

----- 연구자에게 -----

-----.

제15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

----- 용역결과를 평가
하고 평가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3
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
항에 한하되, 용역 결과물과
연구자에 대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단순 반복적인 기
술·전산·설문조사는 평가
에서 제외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조(용역결과 등의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

제13조 (생략)

제15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용역계약 사항(용역의 목적·기간·방식 등),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을 지체 없이 전라북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용역계약사항, 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신설>

위에서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8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① ----- 제15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용역계약 -----

-----.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등의 공개대상은 제3조제2항 제1호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일

<p>② (생략)</p> <p><u>제16조</u> (생략)</p> <p><u>제17조</u>(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u>회의시마다</u>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제18조</u>(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19조</u>·<u>제20조</u> (생략)</p>	<p><u>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u>제19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p> <p><u>제20조</u>(회의록 등) ① ----- - <u>회의 때</u>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21조</u>(수당 및 여비) ----- ----- ----- <u>범위</u>----- ----- ----- -----.</p> <p><u>제22조</u>·<u>제23조</u>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p>
--	---

붙임 1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금번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 및 안전 제척사유 규정 마련 등 구성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예산과 지방행정서기 박수빈

「전라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 예규 제271호

전라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영상기록의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한다.
5.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부서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위법행위”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과 위협·폭행 또는 민원 처리 부서의 기물파손 행위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 또는 자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속하여 폭언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급박한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

비 시스템에 전송·저장할 경우 관리번호, 녹화(녹음)제목, 녹화(녹음)일시, 녹화(녹음)장소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6조의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 기록 유지
-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제6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부서의 장
- 2. 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관리부서의 담당 팀장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용 보호장비 영상·음성기록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 관리책임자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고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

간 보관한다.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1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증거물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교육) ①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23-13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부지 내 공작물 설치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동별	층별	면적(m ²)	바닥면적(m ²)	용 도	
건 축 물 (변경없음)	1	1	165.94	197.50	사무실	현재 건축물대장 (최종 변동일 2022.06.21.)
			31.56		사무실	
		2	165.94	165.94	사무실	
		지붕층	16.02		계단실(면적제외)	
		소계	363.44	363.44		
	2	1	408.00	606.00	폐기물보관	
		1	198.00		소각시설	
		1	131.72	131.72	소각시설	
		소계	606.00	606.00		
	총계		747.0			
공 작 물 (변 경)	기 준		431.0m ²		파쇄기	
	변 경		335.0m ²		파쇄기	감) 96m ² 위치변경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군산시 성산면 산남길 141 / (주)현성환경 대표 윤재현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11.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게재 실음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익산시 공고 제2023-2239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농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농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8월 25일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농업공원)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 고시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도시농업공원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358-1 일원	11,538	-	11,538	익산시고시 제 2023-102호 (2023.05.12.)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농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가. 도시농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총괄)

시설명	시설부지		건축물		비고
	면적(m ²)	비율(%)	바닥면적(m ²)	연면적(m ²)	
총계	11,538.00	100.0	384	384	
도로 및 광장	2,693	23.3%	-	-	
조경시설	567	4.9%	-	-	
휴양시설	275	2.4%	-	-	
도시농업시설	3,536	30.6%	345	345	
편익시설	376	3.3%	39	39	
녹지 및 기타	4,091	35.5%	-	-	

나. 도시농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세부조서

시설 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및 수량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1,538	384	384	-	-
시설면적			7,447	-	-	-	도시텃밭면적포함
			4,357	-	-	-	도시텃밭면적제외
도로 및 광장	소계		2,693	-	-	-	-
		도로(소계)	2,661	-	-	-	-
	가	광장(소계)	32	-	-	-	-
	가-1	진입광장1	32	-	-	-	-
조경 시설	소계		567	-	-	-	-
	나-1	생태연못	464	-	-	-	-
	나-2	관찰테크	103	-	-	-	-
휴양 시설	소계		275	-	-	-	-
	다-1	휴게공간1	54	-	-	-	-
	다-2	휴게공간2	109	-	-	-	-
	다-3	휴게공간3	48	-	-	-	-
	다-4	휴게공간4	9	-	-	-	-
	다-5	휴게공간5	9	-	-	-	-
	다-6	과고라	24	-	-	2개소	-
	다-7	휴게테크	22	-	-	-	-
도시 농업 시설	소계		3,536	345	345	-	도시텃밭면적포함
			(446)	345	345	-	도시텃밭면적제외
	라-1	도시텃밭1	804	-	-	-	시설면적제외
	라-2	도시텃밭2	573	-	-	-	시설면적제외
	라-3	도시텃밭3	575	-	-	-	시설면적제외
	라-4	도시텃밭4	170	-	-	-	시설면적제외
	라-5	도시텃밭5	842	-	-	-	시설면적제외
	라-6	도시텃밭6	126	-	-	실습 체험장	시설면적제외
	라-7	퇴비장	(48)	-	-	2개소	-
	라-8	농기구보관소	(24)	-	-	3개소	-
	라-9	세면장A	(10)	-	-	-	-
	라-10	세면장B	(19)	-	-	2개소	-
	라-11	도시농업센터	(345)	345	345	-	공원관리 시설포함
편익 시설	소계		376	39	39	-	-
	마-1	화장실	39	39	39	-	-
	마-2	주차장	337	-	-	-	-
녹지	소계		4,091	-	-	-	-
		녹지	4,091	-	-	-	-

다. 도로 결정 조서(총괄)

구분	합계			소로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총계	24	1,054.0	2,661.0	-	-	-	-	-	-	24	1,054.0	2,661.0
진입로	4	300	961	-	-	-	-	-	-	4	300	961
연결로	16	534	1329							16	534	1329
산책로	4	220	371	-	-	-	-	-	-	4	220	371

라. 도로 결정 세부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면적 (㎡)	기능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총계						1,054.0	2,661.0					
신설	소로	3	1	6-7	240	844	진입로	산 142-6임	산 142-6임			
신설	소로	3	2	2	40	80	진입로	남측 산 142-1임	소로3-6			
신설	소로	3	3	1.5	13	23	산책로	소로 3-6	소로 3-6			
신설	소로	3	4	1.5	22	46	산책로	휴게데크 북동측	휴게데크 북서측			
신설	소로	3	5	1.5	21	56	산책로	소로 3-6	소로 3-6			
신설	소로	3	6	1.5	164	246	산책로	소로 3-11기점	소로 3-16기점			
신설	소로	3	7	3.5	11	37	시설연결로	소로 3-11기점	소로 3-9 기점			
신설	소로	3	8	1.5	9	15	시설연결로	소로 3-6	소로3-9기점			
신설	소로	3	9	2.5	28	69	시설연결로	소로 3-8 종점	소로 3-10종점			
신설	소로	3	10	2	14	33	시설연결로	광장 북측	소로 3-9종점			
신설	소로	3	11	3	24	71	시설연결로	소로 3-6기점	광장 남동측			
신설	소로	3	12	2.5	14	21	시설연결로	광장 북서측	소로 3-14			
신설	소로	3	13	1.5	19	48	시설연결로	소로 3-14	소로 3-10종점			
신설	소로	3	14	3	72	217	시설연결로	소로3-24종점	소로 3-19			
신설	소로	3	15	3	52	158	시설연결로	소로 3-16 기점	소로3-14			
신설	소로	3	16	3	56	166	시설연결로	소로 3-15 기점	소로3-19기점			
신설	소로	3	17	2.5	14	29	시설연결로	소로 3-15	휴게공간3 남서측			
신설	소로	3	18	2	15	30	시설연결로	휴게공간3 북동측	소로 3-19			
신설	소로	3	19	3	83	249	시설연결로	소로3-16종점	소로 3-20 기점			
신설	소로	3	20	1.5	9	14	진입로	소로 3-19종점	상갈길			
신설	소로	3	21	1.5	33	49	시설연결로	소로 3-23 종점	소로 3-19종점			
신설	소로	3	22	1.5	45	68	시설연결로	휴게공간2 남측	소로 3-21			
신설	소로	3	23	1.5	45	69	시설연결로	소로 3-14	소로 3-21기점			
신설	소로	3	24	2	11	23	진입로	상갈길	소로 3-14기점			

3. 입안사유: 도시농업 확산 및 활성화 추진, 도시민과 어린이의 도시농업 경작체
험 및 다양한 농업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
4. 열람기간: 도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063-859-5892)
6. 의견서 제출: 관계서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열람장소 또
는 우편, 팩스(063-859-7279), 이메일(dudm0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공고 제2023-1255호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중로2-6호선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정 읍 시 장

2023년 8월 25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상동 1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중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1,657㎡
 - 사업규모 : 도로개설 B=14.6~15.0m, L=114.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4길 31, 801호
 - 성명 :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5. 사업기간 : 2023. 3. 4. ~ 2023. 6. 30.(실제공사완료일 : 2023. 6. 5.)
6. 기타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사업의 공사완료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고 제2023-466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8월 25일

1.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1	공공청사	창업지원 센터	요촌동 190-2번지 일원	-	증)680	680	금회	

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80% 이하	1,300% 이하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1	공공 청사	도시계획시설 신설 : 680㎡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상권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요촌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생활 복합화시설을 건립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등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로 결정 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청취사항

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과

다. 의견제출 : 의견은 김제시청 도시과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열람기간내 제출
(전화 : 063-540-3919, 팩스 : 063-540-3171)

라.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소방서 공고 제2023-0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수소방서장
2023년 08월 25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장수소방서 제2023-02호
- ② 상 호: 한국소방안전(유)
- ③ 대 표 자: 송 애 란
- ④ 소 재 지: 장수군 장수읍 준비길 9
- ⑤ 업 종: 소방시설관리업
- ⑥ 등록일자: 2023. 8. 22. 끝.